<유학비자 구비서류 안내>

1) 공통제출서류

- ㅇ 사증발급신청서
- ㅇ 여권 및 여권 사본
- ㅇ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흰 배경, 3.5cmx4.5cm)
- ㅇ 표준입학허가서

  ※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, 초청장으로 갈음.
- ㅇ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
- ㅇ 신분증 사본
- ㅇ (대사관 지정 병원 발급) 결핵진단서

  ※ 지정병원 8곳 : △ 중앙폐병원, △ 하노이 패밀리메디컬, △ 장안병원, △ 바오선병원, △ 홍응옥병원, △ 꽝닝 종합병원, △ 꽝닝 폐병원, △ 하띵 폐병원
- ㅇ 유학/어학연수비자 신청자 작성자료

2) 최종학력 입증서류

- ㅇ 최종학력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공증본
  - · 베트남 외교부 인증 후 사증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영사확인된 학적서류 제출 (영사인증 불가)
- ㅇ 영사확인된 학적서류 원본을 교육기관에 제출한 경우, 사본 제출 가능 (교육기관 원본대조 필)

  ※ **졸업예정증명서(또는 임시졸업증명서)의 경우,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 기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**

3) 재정능력 입증서류(부모 재정보증 원칙)

- ㅇ 계좌잔고증명서 (본인명의) 및 통장원본
  - · 학위과정* : (수도권) 최소 2,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
    (지방) 최소 1,6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

    * (예외) ① D-2-4~D-2-8 유학생의 경우, 최소 예치기간(3개월) 충족 불필요
    ② 컨설팅 대학 유학생의 경우,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필요
  - · 교환학생 : 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(월 1,069,654원 * 체류개월 수) 이상의 잔고 예치
  - · 어학연수과정 : (수도권) 최소 1,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6개월 이상 예치
    (지방) 최소 8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6개월 이상 예치

※ 단, D-2 유학생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금+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적용

※ 베트남 동화로 된 잔고증명서 제출 시 사증 신청일 기준 환율로 계산

※ **양도한 통장은 인정되지 않음.**

○ 재정증빙서류

· 부모 또는 부모 외 가족 재정보증의 경우

※ 부모 부재의 경우, 부모 외 가족이 재정보증가능

- 호적부, CT07,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번역공증본 (국문 또는 영문)
- 부모의 직업 및 소득증명서류 원본 및 번역공증본 (국문 또는 영문)
-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및 번역공증본 (국문 또는 영문)
- 그 외 재산 증명서류

· 부모 외 한국국적인 가족 재정보증의 경우

※ 부모 모두 부재 또는 한국 체류 중일 경우, 부모 외 한국국적인 가족이 재정보증가능

- 호적부, CT07,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번역공증본 (국문 또는 영문)
-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 재직증명서류 원본
- 신원보증서 및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(인감 날인)
-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원본
- 재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사본 및 통장 사본
- 재정보증인의 신분증 사본

· 교육기관관계자(담당교수 등) 재정보증 서류

※ 연구용역 등으로 인하여 재정보증인이 될 경우

- 지도교수 재정보증서 원본 (인감 날인 또는 서명)
- 지도교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

※ 재정보증서에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,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

- 지도교수 재직증명서 원본
- 지도교수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사본 및 통장 사본
- 연구비 명목의 장학금 지급 시, 연구비가 입금되어 있는 교육기관의 계좌잔고증명 사본, 장학금 부담능력 입증서류, 교육기관의 직인확인 서류로 대체가능

· 회사 재정보증의 경우

※ 한국 본사, 베트남 지사 장학생 선발 목적 해당

- 베트남 지사의 노동계약서 사본
- 베트남 지사 투자증명서 번역공증본 (국문 또는 영문)
- 한국본사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(최근 3개월이내 발행)
- 신원보증서 및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(법인인감 날인)
- 법인인감증명서 원본
- 재정보증인 (회사대표)의 신분증 사본

· 장학생의 경우

- 생활비 및 학비 모두 100% 지원 장학생의 경우

∴ 장학증서 원본 (표준입학허가서와 동일한 직인 날인)

- 100% 미만 지원 장학생의 경우

∴ 장학증서 원본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

4) 과정별 제출서류

○ 우수 인증 대학(불법체류율 1%미만)

※ 단, 어학연수(D-4)의 경우 우수인증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필요

· 여권 및 여권 사본
· 사증발급신청서
· 표준입학허가서
·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
· 결핵진단서
·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(국문 또는 영문)
· 신분증 사본

○ 한국어연수과정 (D-4-1)

· 공통제출서류
· 학교 연수계획서 (강의시간표, 강사구성표, 연수시설 등의 내용 포함)
· 최종학력 입증서류
·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(국문 또는 영문)
· 재정능력 입증서류

○ 전문학사, 학사, 석사, 박사과정 (D-2-1~D-2-4)

· 공통제출서류

· 최종학력 입증서류

·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(국문 또는 영문)

· 재정능력 입증서류

○ 특정연구과정 (D-2-5)

· 공통제출서류 (단, 표준입학허가서는 제외)

· 최종학력 입증서류 (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원칙)

·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(잔고증명,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)

·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(대학 총장 직인이 날인된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등)

○ 교환학생 (D-2-6)

· 공통제출서류

· 소속(본국)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원본 (국문 또는 영문)

※ 베트남어로 발급된 경우, 번역공증본 (국문 또는 영문)

·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(초청대학의 공문, 대학 간 체결한 학생 교류협정서(MOU) 등)

· 1학기 이상을 본국 학교에서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(본국대학의 재학증명서, 성적표)

· 재정능력 입증서류

○ 일-학습연계 유학 (D-2-7)

· 공통제출서류

·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국립국제교육원장 발행 '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'로 갈음.

○ 방문학생 (D-2-8)

· 공통제출서류

·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

※ 방문학생 대상자가 GKS 정부초청장학생인 경우,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면제

5) 유의사항

ㅇ 주소이전 여부 등 심사강화

· 사증 신청을 위해 당관 관내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, 원칙적으로 사증 발급 불허

- 신청인의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
- 단, 직장, 학업 등의 사유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주재국 정부, 학교 등 확인 후 발급 여부 결정

ㅇ 서류심사강화

· 표준입학허가서, 학적서류 공증서류, 재정입증서류, 기타 첨부서류는 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

· 학력요건 입증서류는 유효기간(통상 6개월) 내에서만 인정

· 사증발급신청서상의 사진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인터뷰 시 사진과 상이할 경우 불허

· 잔고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

· 번역공증서류 제출 시, 원본사본공증을 원칙

ㅇ 어학능력기준 (한국어 또는 영어)

· 하위대학 입학·진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(D-2-1~8)만 해당

※ 복학생, 정부초청장학생,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은 대학 자체 입학 기준 적용

※ 인증대 및 일반대 유학생의 경우,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사증 심사 시 가점 부여 및 우대

· 한국어 능력

구 분	한국어능력시험(TOPIK)*	사회통합프로그램 (KIIP)	세종학당 한국어과정**
전문학사	**3급 이상**	**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**	**중급1 과정 이상**
(완화) 뿌리산업양성학과	2급 이상	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	초급2 과정 이상
학사(전공심화) 이상	**4급 이상**	**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**	**중급2 과정 이상**
(완화) 예체능 학과	3급 이상	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	중급1 과정 이상
교환학생	**2급 이상**	**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**	**초급2 과정 이상**

※ 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

※ 온라인 세종학당 수료증 제외

· 영어 능력

- 영어사용과정(영어트랙) 유학생은 예외적으로 영어 능력 기준 적용
- TOEFL 530(CBT 197, iBT 71), IELTS 5.5, CEFR B2, TEPS 601점(NEW TEPS 327점) 이상이며, 학위 과정 구분없이 동일 기준 적용

○ 기타 유의사항

· 제출서류 미흡 시 사증발급 불허

· 사증 심사 시 서류 심사 이외에 추가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인터뷰 탈락 시 사증발급 불허

· 허위서류 제출 의심 또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, 비자발급 불허는 물론 주재국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처

· 사증발급 불허자는 불허일로부터 3개월 후 재접수 가능

· 심사 소요일*

- **(재량사증)**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20일
- **(전액 장학생, D-2-4~D-2-8)**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10일
- **(사증발급인정서)**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7일

※ 일반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소요 기간으로 서류 추가 보완, 인터뷰 실시 등의 사유로 소요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.

<참고자료>

【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】

대학별		국가별	체류자격	사증 발급	사증발급 인정서	전자 비자
인증대학	우수 인증대학	국적 무관	어학연수(D-4-1)	○	○	×
			유학(D-2)	○	○	○
	인증대학	국적 무관	어학연수(D-4-1), 유학(D-2)	○	×	×
			석사(D-2-3), 박사(D-2-4)	○	×	○
일반대학		일반 국가	어학연수(D-4-1), 유학(D-2)	○	×	×
		중국, 베트남 몽골, 우즈벡	어학연수(D-4-1)	×	○	×
			유학(D-2)	○	×	×
하위대학	컨설팅대학	일반 국가	어학연수(D-4-1), 유학(D-2)	○	×	×
		중국, 베트남 몽골, 우즈벡	유학(D-2-1~5, D-2-7)	○	×	×
			유학(D-2-6,D-2-8/D-4-1)	×	○	×
	비자제한 대학	국적 무관	유학(D-2-4~6, 뿌리산업 및 복학생)	×	○	×
		정부초청장학생	어학연수(D-4-1), 유학(D-2)	○	×	×

【대상별 사증 발급 내용】

구 분	대상자	약 호	발급 내용
학위과정 일반기준	전문학사과정	D-2-1	체류기간 2년 이내, 단수 - 우수인증대, 인증대 유학생은 체류기간 상한(2년) 부여
	학사과정 (전공심화과정)	D-2-2	
	석사과정 (학·석 통합)	D-2-3	
	박사과정 (석·박 통합)	D-2-4	
	일·학습연계	D-2-7	
	연구과정	D-2-5	체류기간 1년 이내, 단수
	교환학생	D-2-6	체류기간 1년 이내, 단수
	방문학생	D-2-8	
어학연수과정	한국어연수	D-4-1	체류기간 6개월 이내, 단수